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20 호】

2014년 10월 28일 (화)

선 람	기 관 의 장

회 랑							
-----	--	--	--	--	--	--	--

차 려

입법예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63호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	---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4-314호	도로명주소 고시	18
고양시 고시 제2014-315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21
고양시 고시 제2014-316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24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4-14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46호선 외 2개(롯데빅마켓 가감속 차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26
-----------------------	--	----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10 월 28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증명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의 증빙을 전자이미지화 된 전자수입증지로 전면 사용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여 납부 제도의 투명성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전자수입증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나.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에서 전자수입증지로 함(안 제2조, 제3조)
- 다.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을 위한 계기관리담당자 지정 규정 신설(안 제6조 1항)
- 라.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규정 신설(안 제8조)
- 마.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 정비(안 별지 서식)
- 바.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 및 서식 삭제
- 사. 기존 발행된 종이수입증지 폐기(안 부칙 제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1월 17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나. 제 출 처 :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세정과 세외수입팀 (031-8075-225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 “계기” 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계기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시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결산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인영 된 면을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제3조(종이수입증지의 환불)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종이수입증지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 액면 가격으로 환불해 주어야 하며 회수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다만, 소인된 증지는 제외한다.” 를 삭제한다.

②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입증지 또는 인증계기” 를 “수입증지” 로 한다.

소관과		세 정 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세 정 과 장 이 현 옥
	담당 직위·성명	세외수입팀장 양 미 례
	담당자 성명·전화	이 선 주 031-8075-2257

【별지 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

년 월 일(요일)

결 재	담당자	팀장	부서장

☐ 계기 발행(전표기준)

구 분	전일까지 누계 (A)				금일분 (B)				금일까지 누계 (A+B)			
	발행액		결손액		발행액		결손액		발행액		결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발행액은 결손액을 제외한 실제 발행금액

☐ 수입금 불입

과목	금일 불입 금액					불입액 누계	
	금일 발행액 (B=C+D)	현금 징수 (C)	신용카드 결제 (D)	카드대 금수입 (E)	금일 불입액 (F=C, E)	전일까지 불입액 (G)	금일까지 불입액 (F+G)
인증기용 증지							
인증기용 증지(카드)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운영 및 관리----- ----- .
제2조(정의) 고양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 “계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

현행	개정안
<p><u>납부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u>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u> <u>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u> <u>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u> <u>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u> <u>료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4조(증지의 발행)</u></p>	<p><u>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u></p> <p><u>1.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u> <u>조례」에 따른 수수료</u></p> <p><u>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u> <u>한 사용료, 수수료 등</u></p> <p>② <u>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납부는</u> <u>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u> <u>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제5조(행정정보 시스템 등의 사용)</u></p> <p>① <u>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u> <u>불구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u> <u>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수입가공,</u> <u>검색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u> <u>템(이하 “행정 정보시스템”이라 한</u> <u>다), 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u> <u>한다) 및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발</u> <u>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u> <u>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② <u>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u> <u>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u></p>	<p><u>제4조(계기의 사용)</u></p> <p><u><삭 제></u></p> <p>① <u>전자수입증지는-----</u> <u>----- 선명하게 ----- .</u></p>

현행	개정안
<p>1. <u>증지</u> 요금</p> <p>2. 발행기관명</p> <p>3. 발행<u>년월일</u></p> <p>4. 계기 고유번호</p> <p>③ 행정정보시스템 및 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 되어야 한다.</p> <p>④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u>게시판</u>에 고시 하여야 한다.</p>	<p>1. <u>수입증지</u> 요금</p> <p>2. -----</p> <p>3. ----<u>연월일</u></p> <p>4. -----</p> <p><삭 제></p> <p>② 시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 ----- ----- ----- ----- 시 홈페이지에 ----- ----- .</p>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p>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8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p> <p>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p>	<p><삭 제></p> <p>전자수입증지의 ----- ----- 한다.</p>

현행	개정안
<u><신 설></u>	<p><u>제6조(계기의 관리)</u></p> <p>①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p> <p>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u>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u>	<u><삭 제></u>
<u>제8조(증지에 관한 계약 등)</u>	<u><삭 제></u>
<u>제9조(판매인의 결격요건)</u>	<u><삭 제></u>
<u>제10조(판매인의 의무)</u>	<u><삭 제></u>
<u>제11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판매 폐지)</u>	<u><삭 제></u>
<u>제12조(계약해지 등)</u>	<u><삭 제></u>
<u>제13조(증지취급 및 매수)</u>	<u><삭 제></u>

현행	개정안
제14조(변상책임)	<삭 제>
제15조(정액 판매)	<삭 제>
제16조(판매인 수수료)	<삭 제>
제17조(수익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p>①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한 증지대금은 신용카드업자 등으로 부터 입금된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정보시스템, 계기 및 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정보시스템, 계기 및 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 시 금고----- -----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 ----- ----- .</p> <p>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 ----- 5년간 ----- .</p> <p>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인영 된 면을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실제 ----- ----- ----- .</p>

현행	개정안
제18조(증지 진위조사)	<삭 제>
제19조(증지의 소인)	<삭 제>
제20조(증지의 무효)	<삭 제>
제21조(증지의 환매)	<삭 제>
제22조(증지의 교환)	<삭 제>
제23조(출납 정리)	<삭 제>
제24조(보고)	<삭 제>
<신 설>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규칙)----- -----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소인규격	<삭 제>
[별표 2] 표찰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판매계약 체결신청서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판매인증서	<삭 제>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매수(출납, 보관, 교환, 환매)청구서	<삭 제>
[별지 제4호서식] 수입증지불출(교환· 환매)증	<삭 제>
[별지 제5호서식] 수입증지판매대장	<삭 제>
[별지 제6호서식] 수입증지수령증	<삭 제>
[별지 제7호서식] 수입증지판매소 위 치변경 신청서	<삭 제>
[별지 제8호서식] 수입증지판매폐지 신고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수입증지요금계기										[별지 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																																																																																																																		
관리대장										대장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결 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 0 5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font-size: 0.8em;"> 담당자 팀장 부서장 </div> <div style="height: 30px; border: 1px solid black;"></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년 월 일(요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left: 5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font-size: 0.8em;"> 담당자 팀장 부서장 </div> <div style="height: 30px; border: 1px solid black;"></div> </div> </div> </div> </div> </div>																																																																																																																		
										☐ 계기 발행(전표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0.8em;"> <thead> <tr> <th rowspan="3" style="width: 5%;">구 분</th>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전일까지 누계 (A)</th>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금일발행 (B)</th>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금일까지 누계 (A+B)</th> </tr>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발행액</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결손액</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발행액</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결손액</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발행액</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결손액</th> </tr> <tr>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건 수</th>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금 액</th>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건 수</th>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금 액</th>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건 수</th>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금 액</th>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건 수</th>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금 액</th>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건 수</th>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금 액</th>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건 수</th>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전일까지 누계 (A)				금일발행 (B)				금일까지 누계 (A+B)				발행액		결손액		발행액		결손액		발행액		결손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구 분	전일까지 누계 (A)				금일발행 (B)				금일까지 누계 (A+B)																																																																																																									
											발행액		결손액		발행액		결손액		발행액		결손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div style="font-size: 0.8em;">※ 발행액은 결손액을 제외한 실제 발행금액</div>																																																																																																																		
										☐ 수입금 불입																																																																																																																		
<div style="font-size: 0.8em;">※ 조정카드는 1일 1매를 원칙으로 한다.</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0.8em;">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과목</th> <th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금일 불입 금액</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불입액 누계</th> </tr> <tr>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금일발행액 (B+C+D)</th>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현금징수 (C)</th>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신용카드결제 (D)</th>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카드대금수입 (E)</th>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금일불입액 (F=C+E)</th>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전일까지불입액 (G)</th>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금일까지불입액 (F+G)</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증기용 증지</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증기용 증지 (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과목	금일 불입 금액					불입액 누계		금일발행액 (B+C+D)	현금징수 (C)	신용카드결제 (D)	카드대금수입 (E)	금일불입액 (F=C+E)	전일까지불입액 (G)	금일까지불입액 (F+G)	인증기용 증지								인증기용 증지 (카드)	/	/	/																																																																														
										과목	금일 불입 금액					불입액 누계																																																																																																												
											금일발행액 (B+C+D)	현금징수 (C)	신용카드결제 (D)	카드대금수입 (E)	금일불입액 (F=C+E)	전일까지불입액 (G)	금일까지불입액 (F+G)																																																																																																											
인증기용 증지																																																																																																																												
인증기용 증지 (카드)	/	/	/																																																																																																																									

관계법령발췌서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毀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제5조 (변상금액의 감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 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노력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3.25.]

제6조 (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감독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4. 해당 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② 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직위별로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해당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의 판정에 따른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7조 (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고양시 고시 제2014 - 314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0. 28.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42-5 외 2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 ~ 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0.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 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8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42-5	20141028	20131022	고유지명인 도래울 명칭 활용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4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 길 62-1	20141028	20131022	고유지명인 도래울 명칭 활용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613-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305	20141028	20090911	옛군청이 위치한 곳으로 관아를 지칭하는 말을 도로명에 적용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500번길 110	20141028	20100126	서오릉로 시점에서 5000m에 위치 한 도로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47-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솔밭2길 7-5	20141028	20120601	소나무가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하 여 도로명 부여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14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2로 55	20141028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00-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양곡1길 301-28	20141028	20120117	양곡 이가순선생의 공헌, 화생자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59-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41-10	20141028	20090710	광역도로로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 의 도로명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490-41, 490-3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225-13	20141028	20090911	호수공원의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0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286번길 192	20141028	20100126	화랑로 시점에서 2860m에 위치한 도로	
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144-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감내길 85-37	20141028	20100126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 로 192-51	20141028	20100126	건달산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15-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 로 360-20	20141028	20100126	건달산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3-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69-2	2014102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3-30, 3-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69-3	2014102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3-1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69-4	2014102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3-3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69-5	2014102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3-27, 3-2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69-7	2014102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 동 39-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월현길 81-21	20141028	20120110	고유지명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 여	
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90-4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로 153	20141028	20110715	식사지구내 마을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천주교의정 부교구 식사 동성당
2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785-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신덕로 2번길 80-13	20141028	20100126	신덕로 시점에서 20m에 위치한 도로	
2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785-17, 785-19, 785-1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신덕로 2번길 80-19	20141028	20100126	신덕로 시점에서 20m에 위치한 도로	
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785-4, 785-21, 785-2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신덕로 2번길 80-21	20141028	20100126	신덕로 시점에서 20m에 위치한 도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82번길 18외 1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 (☎8075-3096 ~ 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0.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2-2, 474-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500번길 71-8	2014.10.28.	관련지번변경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01-8, 601-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0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258번길 170	2014.10.28.	건물번호분할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01-8, 601-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01-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258번길 152-11	2014.10.28.	건물번호분할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 사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131-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82번길 8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82번길 18	2014.10.28.	도로명주소 착오부여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0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258번길 152-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258번길 170	2014.10.28.	건물번호분할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663번길 59-20 외 10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 ~ 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0.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명실건물 고시일자		법정동	비고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		명실건물	고시일자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663번길 59-20		2014.10.28.		권율대로내편입		2011.07.29.	원흥동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278번길 70-5		2014.10.28.		권율대로내편입		2012.04.24.	도내동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15-98		2014.10.28.		원흥지구내편입		2011.07.29.	용두동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15-112		2014.10.28.		원흥지구내편입		2011.07.29.	용두동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15-122		2014.10.28.		원흥지구내편입		2011.07.29.	용두동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15-126		2014.10.28.		원흥지구내편입		2011.07.29.	용두동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15-130		2014.10.28.		원흥지구내편입		2011.07.29.	용두동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15-134		2014.10.28.		원흥지구내편입		2011.07.29.	용두동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15-140		2014.10.28.		원흥지구내편입		2011.07.29.	용두동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15-146		2014.10.28.		원흥지구내편입		2012.01.20.	용두동	
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월현길 81-21		2014.10.28.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07.29.	사리현동	

고양시 공고 제2014-14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46호선 외 2개(롯데빅마켓 가감속차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롯데쇼핑(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받아 시행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7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46호선 외 2개(롯데빅마켓 가감속차로))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고 양 시 장

○ 공사완료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7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46호선 외 2개:롯데빅마켓 가감속차로)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기능	폭 원 (m)	연 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대로	3	46	보조간선도로	31	450	대로2-15 대화동 1208	대로1-2 대화동 140	가감속 차로 L:122.0m
“	3	47	보조간선도로	34	1,026	제2자우로 장항동 502-70	대로1-17' 장항동 672	가감속차로 L:56.0m
“	1	2	주간선도로	35	6,086	대로2-9 백석동 1508	중로1-68 대화동 2513	중앙분리대 변경 L:215.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 성명 : 롯데쇼핑(주)(대표이사:이원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4. 09. 30.